붙임2 사업재편 지원사업 설명문

1 사업재편제도 개요

○ 사업목적 :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, **부실 방지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**

< 선제적 사업재편 및 사후 구조조정 제도 비교 >

구 분	**사업재편**	**구조조정**	
특 징	**선제적·자율적** 구조조정	**사후적·타율적** 구조조정	
적용법률	기업활력법	기업구조조정촉진법	채무자회생법
대상기업	**정상기업** (개인사업자 제외)	**부실징후기업**	**부실기업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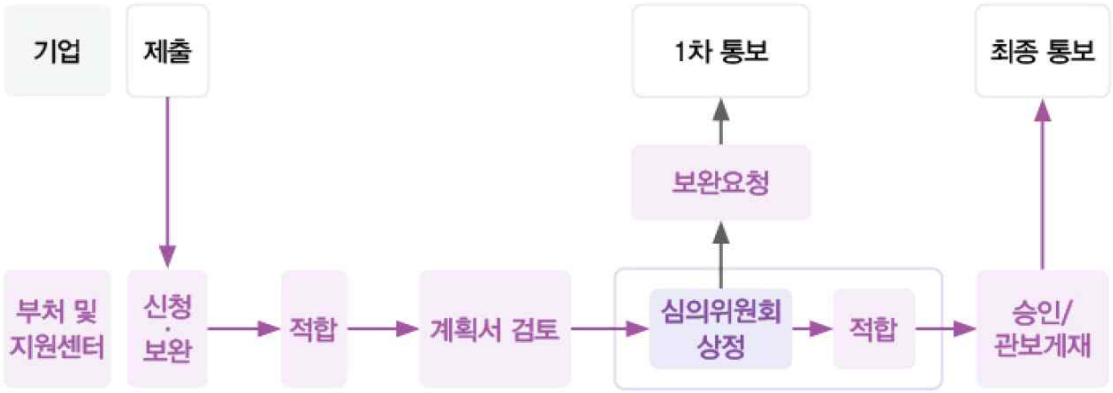
○ 승인유형 : ❶ 과잉공급 완화, ❷ 공급망 위협 해소, ❸ 신산업진출, ❹ 디지털전환, ❺ 탄소중립, ❻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

구 분	내 용
❶ 과잉공급해소	과잉공급 분야 사업 ①비중 축소 또는 ②신시장 개척(수요 확대)
❷ 공급망 위협 해소	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, 저장 및 대체 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
❸ 신산업진출	①「조특법」 신성장·원천기술 활용분야 또는 ②「조특법」 국가전략기술 활용분야 등
❹ 디지털전환	①「조특법」 신성장·원천기술 '지능정보' 기술 또는 ②「기활법」 시행령 별표1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
❺ 탄소중립	①「조특법」 신성장·원천기술 '탄소중립'기술 또는 ②「기활법」 시행령 별표2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
❻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	(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)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→ 지역산업위기대응법(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) 등에 따른 산업위기지정 지역에 속한 기업(*24년 기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역 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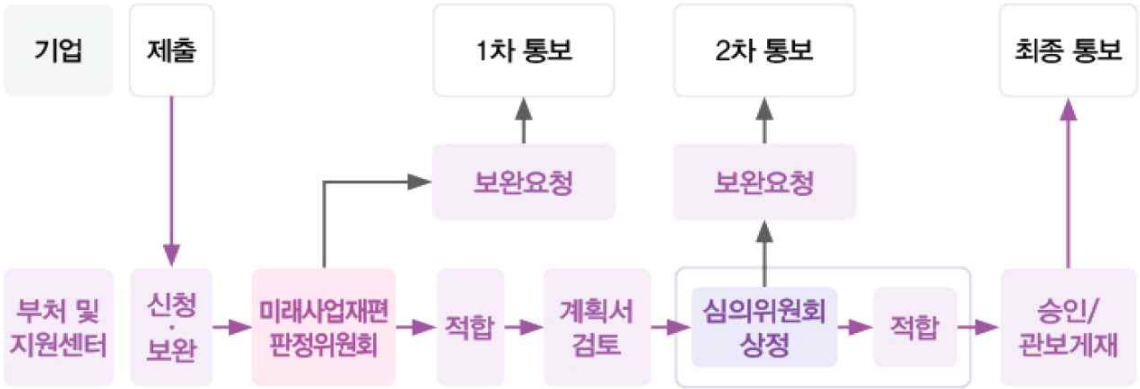
○ 승인요건 : 사업재편(구조변경 · 사업혁신) 계획 +
달성목표(생산성 · 매출액 향상 등)

* (구조변경) 자산 (설비, 지식재산 등)·영업·주식 양수도, 합병, 분할, 회사설립 등
* (사업혁신)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·판매나 원재료 사용·제공 방식의 효율화

공급망 안정*,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 승인절차 *과잉공급 위협, 공급망 위협



미래사업재편* 승인절차 *신산업진출, 디지털전환, 탄소중립활동



승인 및 참여절차

2 지원혜택

○ 승인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사항

– 승인기업은 상법 · 공법거래법상 절차간소화, 세제, R&D, 자금 등 기업활력법 관련 부여되는 지원혜택 중 사업재편 계획과 관련된 것을 활용 가능

참고	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

분 야	주요 지원 내용
R&D	· 정부 R&D 사업 우대가점 부여, 중소·중견기업 과제 수행 한도(중소2, 중견4)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, 기술료 납부유예 등
금융	· (우대지원) 산은·기은, 기보·신보 등 융자·보증 시 금리·요율 등 우대 * (산은) 최대 △1.2%p, (기은) 최대 △0.5%p, (기보) △0.2%p, (신보) 보증비율 95% 적용 및 보증료율 최대 0.5%p 차감 등
	·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(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→ 축소가능) ·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지원 비율 2%p 가산 지원
	· 자산매각 지원(S&LB 방식으로 캠코에서 유동성 공급, '23년 500억 규모)
컨설팅	· 사업재편 이행지원 및 애로해소 컨설팅 -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이행과 인센티브 활용을 지원하고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사업재편의 목표를 달성 지원 * (지원규모) '25년 기준, 기업별 1,100만원 이내
세제	· (법인세) -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, 합병 시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 이연 등 - 이월결손금 100% 공제(대기업도 적용)
	· (등록면허세) 합병·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% 감면
입지특례	·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→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* 양도차익의 70%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적용
고용안정	·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· 산업·일자리전환 지원금
정부사업 우대	· 국내복귀투자보조금 타당성 평가 시 가점 우대(2점)
상법 절차 간소화	· (소규모분할) 자산규모 10% 이하 사업부문 물적분할 시 절차 완화 * 이사회 결의로 갈음(주주총회 생략)
	· (주총 소집기간 단축) 7영업일(상법 : 2주)
	· (채권자 보호절차 단축) 10일(상법 : 1개월)
	· (주주 :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) 10일(상법 : 20일) · (회사 :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) 상장회사 - 3개월(상법 : 1개월), 비상장회사 - 6개월(상법 : 2개월)
공정거래법 규제유예	· 지주회사·자회사·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: 3년(공정거래법 : 1~2년)
	· 상호·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: 1년(공정거래법 : 6개월)
	·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: 3년(공정거래법 : 2년)

※ 지원내용은 제도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음